

의안번호	2200168
의 퇴 인	김태호 의원
회 답 일	2024. 9. 4.
추 계 번호	24A29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가 확대(반경 5km → 15km)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2,03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191억원(연평균 2,038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발전소 주변주역에 대한 지원금 중 “기본지원금”에 한정하여 추계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함
 - 본 추계는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현행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정의(안 제2조)	2,038	2,038	2,038	2,038	2,038	10,191	2,038

주: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현행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발전소 주변주역에 대한 지원금 중 “기본지원금”에 한정하여 추계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가 확대(반경 5km → 15km)되더라도 총 지원금 규모는 발전량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확대된 주변지역에 현행 수준의 기본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¹⁾ 등을 곱하여 산정함
-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요인(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에 한해 현행 사업을 고려하여 추계함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법 제10조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1)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는 다음과 같음.

발전원	원자력	유연탄화력	무연탄화력	유전소화력	가스화력	양수	수력	조력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원/kwh)	0.25	0.18	0.3	0.15	0.1	0.2	0.2	0.2	0.1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기본지원사업 등을 수행함

- 2024년 예산상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499억원 수준임
(주변지역 404억원, 주변지역 외의 지역 95억원)
-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기본지원사업을 수행함²⁾

[표 3] 2024년 기본지원사업(원자력발전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주변지역	주변지역 외의 지역	합계
기본지원사업(원자력발전소)	40,444	9,482	49,94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확대된 주변지역의 인구 수에 현행 1인당 기본지원금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처럼 주변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 주변지역에 속하는 인구 수는 135,472명에서 763,294명으로,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655,753명에서 1,789,737명으로 증가함³⁾
-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주변지역 1인당 기본지원금은 주변지역은 29.9만원,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1.4만원 수준임⁴⁾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2,038억원(=29.9만원×(763,294명-135,472명) + 1.4만원×(1,789,737명-655,753명))으로 추정됨
 - －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과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단가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8	2,038	2,038	2,038	2,038	10,191

주: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현행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24. 8.

4) 동 단가는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자체 지원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현행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